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9. 4(수) 10:00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69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8. 22.
- 라. 회부일자 : 2024. 8. 22.

2. 제안이유

독립유공자와 금천구청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 정비
- 나. 인용조문 정비
 - 1)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의3제1항, 제15조의2, 제19조)
 - 2)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2호)
- 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및 국가유공자증 등 보훈 신분증의 국가보훈등록증 통합에 따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 라.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규정 추가(안 제2조의2제1항제1호라목 신설)
- 마. 금천구청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추가(안 제2조의2제1항제6의2호 신설)
- 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위치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현행 별표 1 비고 제23호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1) 제명 띄어쓰기 정비

2) 인용조문 정비

가)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의3제1항, 제15조의2, 제19조)

나)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2호)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20. 4. 3)되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 관련 인용 조문이 적용됨

3)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및 국가유공자증 등 보훈 신분증의 국가보훈등록증 통합에 따른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4)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는 규정 추가(안 제2조의2제1항제1호라목 신설)

5) 금천구청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추가(안 제2조의2제1항제6의2호 신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3.~6.(생략)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6)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위치 정비(안 제2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현행 별표 1 비고 제23호 삭제)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우리구 조례의 지원 근거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독립유공자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29호, 2024. 1. 12., 일부개정]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선순위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의 구분이 변경 또는 추가된 경우
3.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호에 따른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 11.]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2. 12. 27.>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 6. 20.>

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2. 수소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본조신설 2020. 3. 31.]

[제목개정 2023. 6. 20.] [충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3. 31.>]